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10. 19(월)

문교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9. 9. 30

나. 제안자 : 오홍철·이명숙 의원 외 5인

다. 회부일자 : 2009. 9. 30

라. 상정일자 : 2009. 10. 16 (제177회 임시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

- 제안설명 : 오홍철 의원
- 검토보고 : 문교사회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시 대표축제의 육성 및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전문 법인·단체에게 위탁 추진하고
-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 실시

나. 주요내용

- 시 대표축제 및 민간축제, 군·구축제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함 (안 제2조제3호, 제4호)

-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 추진 조항을 신설함(안 제36조)
- 시 대표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활동사업(축제)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 군·구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함(안 제39조)
- 인천광역시범시민축제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천시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축제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 및 문화예술 전문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평가를 통해 경쟁력 있고 특성화된 문화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오홍철·이명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임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안 제2조)

- 안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서 인천시의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市 대표축제, 민간축제, 군·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음.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사항 >

현행	개정안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과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3. 기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신설) (신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과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3. 기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4. 시 대표축제 및 민간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군·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축제의 사무위탁 및 공무원 파견 (안 제37조)

- 안 제37조에서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예술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축제사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은 현재 市와 군·구 등에서 다수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음에도 경쟁력 있는 대표축제가 없고, 관(官) 주도형 축제 추진으로 인해 나타난 축제 조직의 전문성 결여, 관리운영체제의 미비, 일회성 이벤트 행사, 개최시기의 계절적 집중과 비정기적 개최 등 그 동안 市와 군·구 축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 한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1)에 근거하여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1)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탁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축제사무를 전문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공무원의 파견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제1항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3)에 의하여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군·구 축제의 지원 (안 제38조)

- 안 제38조에서는 군·구 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파견근무)

-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파견근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업무 폭주상태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행정지원을 하는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 정부나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 연구기관, 국내 민간기관과 국내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하거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근 3년간 군·구 축제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

군·구	축 제 명	개최기간	국·시비 지원 실적			비고
			2007년	2008년	2009년	
계			520,000(시)	60,000(국) 55,000(시)	60,000(국) 165,000(시)	
중 구	월미관광특구문화축제	9월	40,000	30,000(시)	0	
동 구	화도진축제	5월	40,000	0	0	
남 구	비전남구문화축전	10월	50,000	0	0	
연수구	능허대축제	10월	50,000	0	0	
남동구	소래포구축제 (문화관광예비축제)	10월	50,000	30,000(국)	30,000(국) 70,000(시)	
부평구	풍물대축제 (문화관광예비축제)	5월	90,000	30,000(국)	30,000(국) 70,000(시)	
	전통문화야외상설공연	4월~10월	0	25,000(시)	25,000(시)	
계양구	계양산축제	9월	40,000	0	0	
서 구	랑랑축제	10월	50,000	0	0	
강화군	고인들문화축제	10월	70,000	0	0	
용진군	영흥도풍어제	3월	40,000	0	0	

□ 축제의 평가 (안 제38조)

- 안 제39조에서는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시책 및 개최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 개선 사항 등을 다음 행사에 반영하도록 하였음
- 축제의 평가는 인천시 및 군·구에서 주최하는 축제가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고, 행사의 진행방식과 과정상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개선과제 등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평가결과를 다음 행사에 반영함으로써 축제의 질을 높이고 지역이미지의 대외 인지도 제고 및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지역상권의

활성화, 지역 주민의 친밀감과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등 보다 발전된 축제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인천광역시범시민축제지원에관한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범시민축제지원에관한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음.

동 조례는 인천의 정체성 확립과 국제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시민축제를 지원하고자 2000년2월14일 제정하였으나,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본 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함으로써 축제업무의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시행을 위해 삭제한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김용근, 이명숙, 박창규, 오흥철, 정종섭, 최병덕 위원
 - 축제사무를 위탁할 경우 관련공무원을 파견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떤지?
 - 본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범시민축제지원에관한조례」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폐지해도 문제점은 없는지?
 - 현재 등록된 사단법인 중 시에서는 몇 건을 추천했는지?
 - 법인이 운영이 잘 되지 않으면 폐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현재 등록된 법인 중 시에서 직원의 급여를 지원해 주는 단체는?

< 답 변 >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 축제를 위탁한 법인 등에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은 시의

정원이나 인력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인천광역시범시민축제지원에관한조례」는 인천세계축축제를 위해 제정한 조례로, 본 조례를 개정하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므로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음
- 약 80건 정도임
- 시에서는 정관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해 주고 있으며, 정기점검을 통해 변경신청 없이 사업장 이전 등 문제점이 발견될 시 법인을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음
- 시에서 설립한 인천문화재단만 지원해 주고 있음

5. 토론요지

- 가. 찬 성 : 김용근, 이명숙, 박창규, 오홍철, 정종섭, 최병덕 위원
-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찬성 : 6명)

7. 기타 특이사상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 대표축제 및 민간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문화예술축제의 육성 및 지원

제36조(축제의 육성)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축제의 육성 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축제의 사무위탁) ①시장은 시 대표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 사업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에게 제2조 제3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에서 축제 등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제38조(군·구 축제의 지원) 시장은 제2조제4호의 군·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축제의 평가) ①시장은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시책 개
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는 외부평가(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에 의한 평가를 제외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
를 병행하며 평가결과 개선 발전 사항 등을 다음 행사에 반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범시민축제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및 기능) (생략)	제2조(설치 및 기능)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설)	3. 시 대표축제 및 민간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4. 군·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제10장 문화예술축제의 육성 및 지원
(신 설)	제36조(축제의 육성)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축제의 육성 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37조(축제의 사무위탁) ①시장은 시 대표축제의 전문성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 사업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에게 제2조제3호의 사무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에서 축제 등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우선적으로 위탁 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 설)	제38조(군·구축제의 지원) 시장은 제2조제4호의 군·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신설)	<p>제39조(축제의 평가) ①시장은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 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외부평가(제37조의 규정에 우한 수탁자에 의한 평가를 제외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를 병행하며 평가결과 개선 발전 사항을 다음 행사에 반영한다</p>